



동서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은 해고자 복직에 적극 나서라 발전해복투 “참을 만큼 참았다”, 복직요구 산자부 투쟁 돌입!

발전해복투(발전노조 해고자복직 투쟁위원회)가 복직을 요구하며 8월 12일부터 산자부 투쟁에 나선다.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해고자들이 산자부 타격투쟁을 강도 높게 결의하게 된 배경에는 해고자가 있는 3개 발전회사가 무성의하고도 기만적인 태도로 우리를 우롱했기 때문이다.**

해고자복직 관련 진행경과

작년 8월 남동발전 해고자 2명 합의복직 이후 동서/서부/남동발전은 복직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으나 복직에 대한 진전 없이 지체부진 했었다.

이후 산자부 권고로 발전노조, 발전3사(동서/서부/남동), 협력본부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실무회의 1회와 노·사와 전문가위원을 포함시키는 해고자복직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 2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발전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참여를 원할 시 참여보장**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협력본부에서 3개 기업노조에게 참여 의사를 7월 19일까지 회신 달라는 공문 발송) 발전노조가 확인하기에도 어느 기업노조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참여하겠다는 기업노조도 있었다.

그러나 7월 중순이내에 개최하기로 한 해고자복직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3차 준비위원회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기업노조가 엉뚱한 대표교섭권을 내세우며 지난 6개월여의 해고자복직을 위한 발전노조의 노력을 묵사발 내어버린 것이다. 이윽고 8월 5일 **동서/서부/남동 회사와 기업노조는 법적 교섭권을 내세우며 해고자 복직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은 발전3사 대표노조와 발전3사 간 논의하기로 한다고 통보해 왔다.**

발전3사가 기업노조와 손잡고 해고자복직 판을 엮다

발전노조보다 기업노조가 다수노조이기에 대표교섭노조인 것은 맞다. 그러나 기업노조에서 주장하는 법적 교섭권은 임금 단협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의미한다. 설사 소수노조라 하더라도 회사가 동의하면 교섭에 임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안은 법적 교섭권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정부의 권고로 이루어진 해고자복직을 위한 노·사간 합리적 대화의 장이었다. 해고자복직은 그동안 노동자탄압에 대한 화해의 의미의 자리이다. 그러기에 회사가 복직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자리이다.**

그러나 회사는 기업노조 핑계대로 기업노조는 터무니없는 대표교섭권을 들먹이며 발전노조와 해고자를 우롱하고 있다. 단일노조시절 모든 발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해고동지들을 감싸안지는 못할망정, 복직에 헐방을 놓는 이런 패륜적 행위의 막장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해왔다. 6명의 해고자가 모두 발전노조 소속이지만 해고자 복직을 위해서라면 논의에 기업노조의 참여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회사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복직을 위해서라면 함께 하자는 입장이지 공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 최소한 노동조합이라면, 지금은 노조를 달리해도 그 뿌리가 발전노조이기에 해고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발전3사가 3개 기업노조와 합의하에 발전노조를 밀어낸 채 판을 엮어버렸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 앞면에서 이어집니다)

해고자 원직복직 이번에는 끝장내자!

이제 발전노조는 해고자원직복직 투쟁의 마침표를 찍으려한다. 해고동지들의 가열 찬 선봉투쟁의 의지에 반드시 해고자원직복직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발전소 민영화 저지 투쟁과 우리의 생존권사수 투쟁에 앞장서다 해고된 동지들의 아픔을 이제는 복직으로 씻어내자!

성 / 명 / 서
전국공공운수노조

ILO 핵심협약 취지 역행하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고용노동부의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법 개악안에 부쳐

7월 30일, 고용노동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해온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를 무시한 채 30년 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또다시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노동계 편향적’이라는 경총과 보수 세력의 생떼와는 반대로 정부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한참 미달한다. 개정안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실업자·해고자의 산별노조 가입을 기업별 단위로 확대하지만 **사업장 출입이나 임원 자격 등 노조활동을 추가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장 점거 제한 조항**은 ‘생산활동 방어 기본권’이라는 사용자의 ‘아무말’과는 달리 ‘평화롭지 않은’ **단체행동만 제한**

하는 국제기준과 충돌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확대는 이미 ILO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다. 이 모든 조항은 협약 비준 시 기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을 금지하도록 ILO 헌장이 명시한 ‘역진금지’(non-regression)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빠졌다는 점**이다. ILO는 수차례 권고를 내어 한국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 박탈은 ILO 핵심협약 87호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한-EU FTA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해온 유럽연합도 ‘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배제’된 점을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짚고 있다.

그럼에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은 누락되었다. 추후 과제로 다루겠지만 사실상 법원에 건별 판단을 맡기는 방식으로 정부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 하청노동자들과의 교섭은 물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원청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아 비정규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 정비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

필수유지업무 역시 변함이 없다. ILO와 국제사회는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교통·항공·에너지·의료 등 여러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파업권 행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제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해 ‘땅콩회항’ 등 양대 항공 재벌의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업권 제한이 결국 재벌에 대한 제어 불능으로 이어졌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또 철도·지하철 분야에서는 파업 장기화를 유발해 ‘공익과 기본권의 조율’이라는 제도 취지와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문제에 눈을 감고만 있다.

우리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우리의 노동법과 제도를 고쳐 보편적 인권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와 목표를 이해는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개악안을 덧칠해 ILO 핵심협약 취지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한 후, 그 취지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기준에도 미달하고, ILO 협약의 취지조차 훼손하는 노동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22만 공공운수노조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역행하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힌다.